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감사 및 공시 개선방안

박종성* · 정문기**

<요 약>

최근 들어 당기감사인은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을 요구하는 반면, 전임감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감사인과 전임감사인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당기감사인이 제시한 수정사항이 명백한 오류라기보다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경우 두 감사인 간 갈등은 더 심화된다. 이러한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공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진이 전기오류수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만, 당기감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재작성된 전기 재무제표가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회사가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과거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였으나 전임감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으면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 수치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한 감사 및 공시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전기오류수정, 재무제표 재작성, 사업보고서, 외부감사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ongsung@sookmyung.ac.kr, 주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mkchung@skku.edu,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8년 10월 5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30일

I. 서 론

최근 들어 지정감사인의 보수적인 판단으로 인해 전기오류수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감사절차 및 공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는 명백한 회계기준의 위배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추정과 판단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다.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아니면 오류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전임감사인은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임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에 갈등이 발생된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에 따를 경우 외감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된 감사인만이 법정감사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기감사인은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법정감사인인 아니라는 이유로 전기재무제표의 오류수정사항에 대한 감사를 꺼려한다. 이 때 전임감사인마저 전기재무제표 수정사항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오류수정사항은 누구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된다. 또한 회사가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과거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였으나 전임감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으면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 수치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진다. 이 경우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감사의견이 없는 수정 재무제표를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사의견이 존재하는 수정전 재무제표를 이용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¹⁾

전기오류수정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공시규정도 불명확하다. 미국은 전기오류수정사항을 Big R과 Little r로 구분하고, Big R의 경우에는 과거 SEC에 제출하였던 10-K를 정정(정정보고서를 10-K/A라 함)하여 다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Little r의 경우에는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재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오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과거에 발행되었던 사업보고서를 수정해서 재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수정하면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정사항 관련 Q&A(2013.3.)²⁾’를 보면 두 방법 모두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기오류수정사항이 존재할 때 어떤 기업은 과거 사업보고서를 수정하여 재발행하고 어떤 기업은 사업보고서 재발행 없이 당기 사업보고서 상에서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수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한편, 회사가 당기 사업보고서 상에서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수정할 경우 오류가 포

-
- 1) 한 신용평가회사 DB담당자와의 면담에 따르면 감사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수정전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경우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 개정사항 관련 Q&A(2013.3.)에서 금융감독원은 감리에서 감경을 받기 위한 자진 수정·공시방법으로 당기 사업보고서상 비교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거나 과거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함된 과거의 사업보고서가 시장에 계속적으로 유통되는 위험이 발생되며, 당기 사업보고서 상의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의 수치와 과거 사업보고서 상의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져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은 2016년 지정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2016년 사업보고서에서 비교표시된 2014년과 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하였으나 해당연도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오류 수정전 재무제표가 포함된 2014년 및 2015년 사업보고서가 현재까지도 그대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양연도 사업보고서 상의 재무제표 수치와 2016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된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사업보고서 상단에 “비교공시된 제9기, 제8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작성 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어 비교표시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전기오류수정사항과 관련된 감사 및 공시의 문제는 대부분 전임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의 견해 차이 때문에 발생된다. 특히 감독당국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지정 감사인이 매우 보수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임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오류수정 여부를 회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당기감사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당기감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회사는 당기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만 전임감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감사의견이 없는 상태로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또한 과거에 공시되었던 자료와도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주기적 지정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절차 및 공시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책당국이 전기오류수정과 관련된 감사 및 공시제도 개선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

1.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전기오류란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말한다(K-IFRS 제1008호 문단 5). 이러한 전기오류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은 그동안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표 1>은 전기오류수정방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1981년 12월 23일 최초 제정

된 기업회계기준은 전기오류수정을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 규정은 1996 회계연도까지 적용되었다. 1996년 3월 30일 개정된 기준은 과거와 달리 전기오류 수정손익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여 당기손익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며, 1998년 4월 1일 개정된 기준에서 처음으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2001년 3월 30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는 2002 회계연도부터 2010 회계연도까지 적용되었는데, 이 기준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전기오류의 수정은 당기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하고 중요한 전기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 중 전기오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2011년 K-IFRS가 전면 도입되며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는 K-IFRS 제1008호로 대체된다. K-IFRS 제1008호는 전기오류가 발견된 경우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소급 재작성이라 함은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을 말한다(K-IFRS 제1008호 문단 42). 즉, K-IFRS 제1008호의 전기오류에 대한 소급 재작성 규정은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라는 의미이지 이미 공시된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여 공시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보고서에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정보를 비교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오류가 발견된 경우 비교표시되는 직전 2개 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하면 된다.

〈표 1〉 오류수정 관련 회계기준 변천 과정

기 간	회계처리방법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1981년 이전	당기손익(특별손익)에 반영	×
1982년~1996년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	×
1997년~1998년	당기손익(특별손익)에 반영	×
1999년~2001년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	○
2002년~2010년	중요한 오류는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	○
2011년~현재	전기오류를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비교 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	○

출처 : 박경진 · 김기영 · 송문섭, 2014. K-IFRS하에서 오류수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의 문제점. 『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p.352.

다만, 오류가 직전 2개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K-IFRS 제1008호 문단 42).

그런데 박경진 등(2014)은 이러한 K-IFRS의 소급 재작성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이익 조정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경우 오류수정으로 인하여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고, 또한 정보이용자들이 오류수정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의도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고 이후 연도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오류수정 효과를 오류수정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도록 하는 K-IFRS의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미국의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규정

미국은 전기오류를 Big R과 Little r로 구분하고 있다. Big R은 발견된 오류가 전기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경우를 말하며, Little r은 발견된 오류가 전기재무제표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나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중요하지 않은 오류가 여러 기간 동안 계속 수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가 그 누적액이 당기에 중요해지는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Big R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과거에 발행했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전기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수정을 반영한 10-K/A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표 2〉 Form 10-K 및 Form 10-Q 제출시한

구 분 (public float*)	Form 10-K 제출시한	Form 10-Q 제출시한
Large Accelerated Filer (\$700MM or more)	60 days	40 days
Accelerated Filer (\$75MM or more and less than \$700MM)	75 days	40 days
Non-accelerated Filer (less than \$75MM)	90 days	45 days

*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보유한 보통주 시가총액

출처 : <https://www.sec.gov/fast-answers/answers-form10khtm.html>

또한 회사는 발견된 전기오류가 Big R에 해당되어 재무제표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8-K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 과거 재무제표를 이용하지 말 것을 공지해야 한다(E&Y, 2017). 또한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인해 10-K 또는 10-Q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

우 회사는 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1영업일 이내에 12b-25³⁾(지연 공시 통보)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10-K는 제출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그리고 10-Q는 제출기한 경과 후 5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Audit Analytics, 2015).

〈표 3〉 Big R Restatement와 Little r Restatement 비교

구 분	Big R Restatement	Little r Restatement
오류의 유형	발견된 오류가 과거 재무제표에서도 중요한 경우	발견된 오류가 과거 재무제표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나 당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경우
오류의 수정 방법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 수정
전기재무제표 이용금지 통보 (8-K SEC에 제출)	○	×
10-K/A 제출	○	×
확인된 오류가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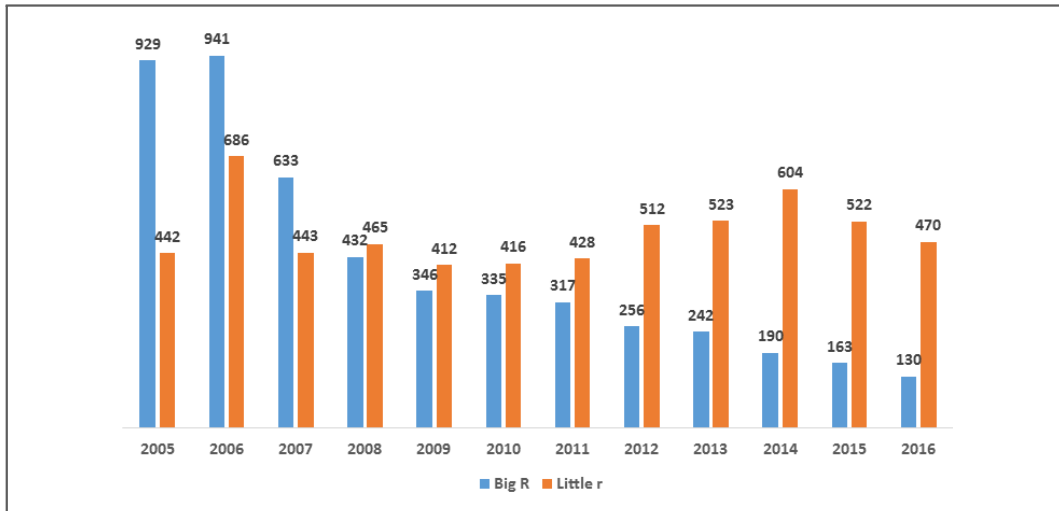
반면 Little r의 경우에는 발견된 오류가 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미 발행한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8-K 제출의무도 없다. 다만,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또한 과거의 재무제표가 중대하게 왜곡표시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감사의견을 변형할 필요도 없다.

회사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러한 오류가 관련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관한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만 한다. 내부통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데, 그 이유는 내부통제의 설계나 실행 중 일부분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통제 미비점이 존재)이 있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났을 때 회사는 그러한 미비점이 단순한 미비점인지 아니면 유의한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E&Y, 2017).

<그림 1>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오류유형별 기업수를 보여주고 있다. Little r의 경우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0-K/A 및 8-K 제출이 요구되는 Big R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Wall Street Journal은 2002년 Sarbanes-Oxley Act에 따라 재무보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The Wall Street Journal, 2017.6.7.).

3) 12b-25에는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그림 1〉 미국의 오류유형별 기업수(2005~2016)



출처 : <http://www.auditanalytics.com/blog/2016-financial-restatements-review/>

III. 전기오류수정 공시 사례

회사는 전기오류가 발견된 경우 K-IFRS 제1008호의 규정에 따라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는 누구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는 회사가 자발적으로 전기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미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정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전기오류 발견 시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재작성할 뿐 과거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정감사인의 요구에 따라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4개 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전기오류수정과 관련된 현행 감사 및 공시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 어떤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지를 제시한다. <표 4>는 분석대상 기업의 기본적인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4개 기업 모두 감사인 지정에 따라 감사인이 교체되었으며, 교체 후 감사인의 요구에 의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다. 한신공영의 경우 전임감사인이 수정내용에 동의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였으며, 회사도 이를 반영하여 과거 사업보고서를 정정하여 공시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사업보고서는 재발행되었으나 감사보고서는 재발행되지 않았으며, 대우조선과 한진중공업은 오류 발생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모두 재발행되지 않은 사례이다.

〈표 4〉 재무제표 재작성 사례기업의 개요

구 분	한신공영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한진중공업
오류발생연도	2012년	2015년	2015년	2015년
오류수정연도	2014년	2016년	2016년	2016년
오류발생연도 감사인	한영	안진	삼일	삼일
오류수정연도 감사인	삼일	삼일	안진	안진
오류수정연도 감사인 지정 여부	○	○	○	○
오류발생연도의 사업보고서 재작성 유무	○	○	×	×
오류발생연도의 감사보고서 재작성 유무	○	×	×	×

출처 : 해당기업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1. 한신공영

회사는 2014년 7월 우선주 상장폐지를 앞두고 관리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14년 4월 14일 금융감독원의 회계법인 지정 통보에 따라 회계법인을 한영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지정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과거에 사업권 양도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전임감사인은 이에 동의하여 2014년 8월 29일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고, 회사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보고서를 모두 정정하여 공시하였다. 최초 발행되었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는 최종문서가 아니므로 투자판단 시 유의하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었다. 이처럼 과거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수정발행 한 결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재무정보가 일치하고 있다.

〈표 5〉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추출된 한신공영의 2012년 재무제표 수치 비교

구 분	2014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된 2012년 재무제표	2012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KIS-VALUE	TS-2000***	TS-2000*** (비교공시)
자 산	1,502,729	1,502,729	1,502,729	1,502,729	1,502,729	1,502,729
부 채	1,170,553	1,170,553	1,170,553	1,170,553	1,170,553	1,170,553
자 본	332,176	332,176	332,176	332,176	332,176	332,176
매 출 액	926,361	926,361	926,361	926,361	926,361	926,361
영업이익	35,471	35,471	35,471	35,471	35,471	35,471
당기순이익	5,428	5,428	5,428	5,428	5,428	5,428

- * 직전연도(2013) 재무제표 자료가 아닌 직전전연도(2012) 재무제표 자료를 비교한 이유는 전임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이후에 직전연도(2013) 재무제표에서 추가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2014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된 2013년 재무제표 수치가 2013년 정정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 수치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 2014년 8월 29일에 정정된 보고서 상 수치임
-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재무DB에는 최초 공시된 재무제표 자료 외에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 자료를 함께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이 TS-2000(비교공시) 자료임. 다만, 사업보고서가 재발행된 경우에는 최초 공시자료(TS-2000)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대우조선해양

회사는 2016년에 외감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거, 감사인이 기존의 안진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 변경되었다. 회사는 2017년 5월 11일에 당기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요구 및 감리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재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5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하여 재발행 하였다. 그러나 전임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정정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정정사업보고서에는 수정 전 재무제표에 대한 전임감사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한편, 당기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16년 감사보고서에 기타사항으로 “전기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고 타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는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관련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는 조정사항이 반영된 재무제표라는 사실”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조정사항에 대해 감사절차를 취했다는 언급은 없다.

이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한 감사 및 공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 (1)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는 누구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정보의 신뢰성이 결여된다.
- (2) 정정공시된 전기(2015) 사업보고서에 수정 전 재무제표에 대해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제한의 언급이 없으므로 전임감사인이 의도하지 않은 감사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3) 사업보고서 상의 재무제표 수치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한편,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이라 함) 및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이라 함) 등 재무DB 제공회사들은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한 경우 감사보고서 재발행이 없었더라도 모두 수정된 재무제표 수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추출된 대우조선해양의 2015년 재무제표 수치 비교

구 분	2016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된 2015년 재무제표	2015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KIS-VALUE	TS-2000	TS-2000 (비교공시)
자 산	18,880,345	18,880,345	19,055,817	18,880,345	18,880,345	18,880,345
부 채	18,261,474	18,261,474	18,619,340	18,261,474	18,261,474	18,261,474
자 본	618,871	618,871	436,477	618,871	618,871	618,871
매 출 액	15,443,611	15,443,611	15,007,089	15,443,611	15,443,611	15,443,611
영업이익	-2,124,493	-2,124,493	-2,937,194	-2,124,493	-2,124,493	-2,124,493
당기순이익	-2,209,244	-2,209,244	-3,306,676	-2,209,244	-2,209,244	-2,209,244

* 회사가 2015년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한 바, 동 수치는 정정 사업보고서 상 수치임

** 정정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 상의 수치이나 전임감사인인 2015년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보고서 수치와 차이를 보임

3.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금융감독원 감리결과에 따라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을 지정받았다. 당기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인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적용 오류 및 총 예정원가 추정의 오류 등으로 인해 전기재무제표가 재작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회사는 감사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6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되는 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다.

〈표 7〉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추출된 대우건설의 2015년 재무제표 수치 비교

구 분	2016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된 2015년 재무제표	2015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KIS-VALUE	TS-2000	TS-2000 (비교공시)
자 산	10,063,707	10,152,059	10,152,059	10,063,707	10,152,059	10,063,707
부 채	7,270,402	7,321,378	7,321,378	7,270,402	7,321,378	7,270,402
자 본	2,793,304	2,830,681	2,830,681	2,793,304	2,830,681	2,793,304
매 출 액	9,889,965	9,935,734	9,935,734	9,889,965	9,935,734	9,889,965
영업이익	168,935	343,434	343,434	168,935	343,434	168,935
당기순이익	104,648	142,037	142,037	104,648	142,037	104,648

* 회사와 전임감사인 모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수치는 수정 전 재무제표 수치임

그러나 회사는 기 발행된 2015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하지 않았으며, 전임감사인 또한 2015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았다. 2015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최종문서가 아니므로 투자판단 시 유의하라는 경고문구 없이 현재도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우 앞의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지적했던 문제점 외에 당해 연도(2016)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된 전기재무제표 수치와 전년도(2015) 사업보고서 상의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추가로 발생된다. 재무DB 제공회사들 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신평의 경우 수정 후 재무제표 수치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상장협은 수정 전 재무제표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상장협의 경우 수정된 수치를 비교공시 자료로 제공하고 있긴 하다.

4.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역시 감사인 지정으로 인해 2016년 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에서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회사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 회계연도의 회계추정의 오류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31일과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다. 한편, 회사는 당기(2016) 사업보고서에 “비교공시된 전기(2015)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전기(2015)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지는 않았으며, 감사인 또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았다.

〈표 8〉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추출된 한진중공업의 2015년 재무제표 수치 비교

구 분	2016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된 2015년 재무제표	2015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KIS-VALUE	TS-2000	TS-2000 (비교공시)
자 산	5,754,767	5,914,637	5,914,637	5,914,637	5,914,637	5,754,767
부 채	4,576,731	4,546,048	4,546,048	4,546,048	4,546,048	4,576,731
자 본	1,178,036	1,368,589	1,368,589	1,368,589	1,368,589	1,178,036
매 출 액	3,063,623	3,115,473	3,115,473	3,115,473	3,115,473	3,063,623
영업이익	-223,360	-79,370	-79,370	-79,370	-79,370	-223,360
당기순이익	-392,257	-260,925	-260,925	-260,925	-260,925	-392,257

* 회사와 전임감사인 모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수치는 수정 전 재무제표 수치임

이 사례의 경우 대우건설의 사례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다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신평의 자료 제공방식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대우건설의 사례에서 한신평은 사업보고서 재발행 없이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만 재작성하였어도 수정된 재무제표 수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진중공업의 사례에서는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전 재무제표 수치를 제공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IV.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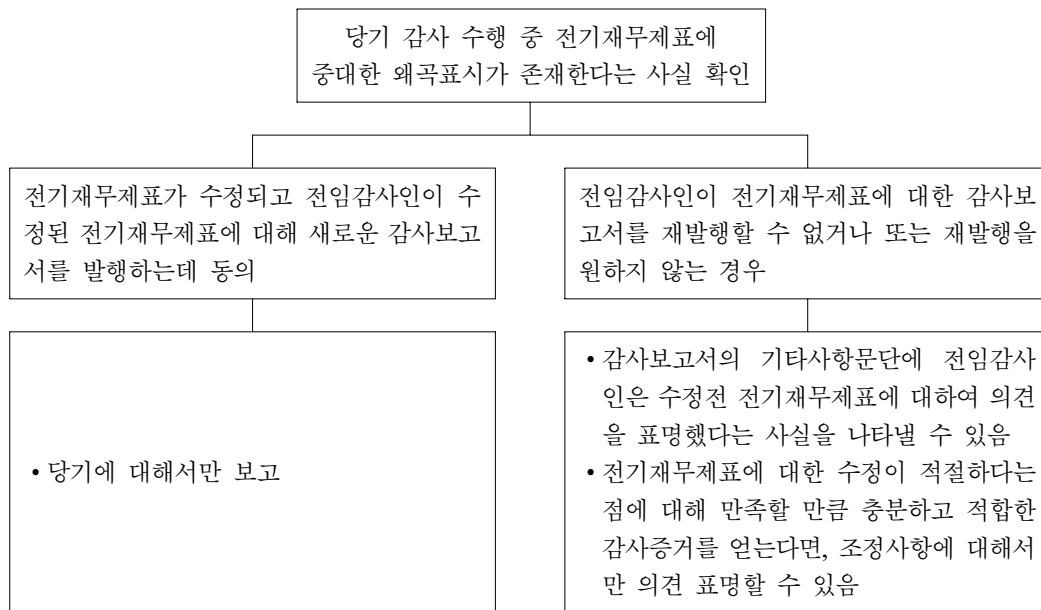
1. 현행 규정

전기오류에 대한 감사절차는 현행 감사기준서 560 및 710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감사기준서 560 문단 14-17에는 전기오류에 대해 전임감사인이 취해야 할 감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감사보고서일에 감사인이 알았을 경우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사실을 재무제표 발행일 이후에 알게 된 경우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감사기준서 560 문단 14). 그리고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 감사인은 수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절차를 취하고 감사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새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감사기준서 560 문단 15).

- (1) 경영진,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배기구와 이 사항을 토의함
- (2)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 (3)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이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질문함

한편, 감사기준서 710 문단 18에는 전기오류가 발견된 경우 당기감사인이 취해야 할 감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당기감사인은 전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전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적합한 수준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이에 대해 협의하고, 전임감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회사에 요청한다.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고 전임감사인이 수정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해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동의한다면, 당기감사인은 당기에 대해서만 보고한다(감사기준서 710 문단 18). 그러나 전임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할 수 없거나, 또는 재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기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수정전 전기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전임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기술할 수 있다. 또한, 당기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적절하다는 점에 대해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는다면, 감사보고서에 다음의 문구를 포함시킬 수 있다(감사기준서 710 문단 A11).

“우리는 20×2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 회사가 20×1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위해 적용한 주식 X에서 기술되어 있는 조정사항들에 대하여도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동 조정사항들은 적절하며 바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의 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1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나 검토, 기타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년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감사의견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현행 감사기준서 560 및 710에는 전기오류에 대해 전임감사인 및 당기감사인이 취해야 할 절차가 규정되어 있긴 하나, 전임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에 전기오류에 대한 견해차이가 존재할 때 이에 대한 처리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감사받지 않은 재무정보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감사기준서 560에 따라 전임감사인이 경영진이 수정한 재무제표에 대해 필요한 감사절차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제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임감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설사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임감사인은 수정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수도 있으나, 현행 외감법에 따를 경우 외감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된 감사인만

이 법정감사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기감사인은 전기오류에 대해 감사절차를 취하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감사기준서 710에 전임감사인이 전기채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할 수 없거나 또는 재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기감사인이 취해야 할 절차가 규정되어 있긴 하나 강제규정이 아니다. 한편, 당기감사인이 전기채무제표 수정사항 또는 전기채무제표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감사가 아닌 임의감사에 해당되는 문제점도 있다.⁴⁾

이런 상황에서 전임감사인이 독립성 상실 등의 이유로 현 시점에서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혹은 수정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감사보고서 재발행을 거부하게 되면 오류수정을 반영한 재무제표는 누구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된다. <표 9>는 2015~2017.5월 기간 중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한 기업 중 감사보고서가 재발행되지 않은 기업의 목록이다.

<표 9> 2015~2017.5월 중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정정공시 중 감사보고서 미수정기업

회사명	정정대상		정정공시	
	연도	감사인	연도	감사인
대우조선해양	2014, 2015	안진	2017	삼일
코리드	2014, 2015	다산	2017	삼덕
GMR머티리얼즈	2011, 2012, 2013	한미	2016	안세
원익큐브	2015	삼덕	2016	삼덕
버추얼텍	2014	우리	2016	우리
유니켄	2014.6월	한영	2015	안진
서한	2014	서일	2015	서일

출처 : 한국회계학회. 2018. 『전기오류수정 관련 공시제도 개선방안』. p.26.

앞의 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회사가 재무제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과거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였으나 전임감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으면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 수치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진다. 물론 전기오류가 명백하다면 전임감사인은 감리에서 감경을 받을 목적(감리착수 전에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경우 2단계 감경 조치함)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겠지만 추정치의 수정 등 판단 상의 문제일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

4) 물론 현행 자본시장법 상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외감법에 따른 법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감사인 뿐만 아니라 당기감사인 또는 제3의 감사인이 재감사를 수행한 후에 감사보고서를 발행, 정정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이 가능하나, 당기감사인은 책임확대를 꺼려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하려 한다.

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재무제표를 이용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수정된 최근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견이 있는 수정전 재무제표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한 신용평가회사의 재무제표 DB 담당자는 이 경우 감사의견이 있는 수정 전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기오류수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3. 개선방안

가.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감사절차 개선

재무제표가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의 이유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면 반드시 적절한 검증을 거친 후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 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당기감사인인 요구에 의해서든 아니면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든 전기오류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회사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책임자로서 이에 대해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지배기구 및 전임감사인과 적절히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한편, 전임감사인은 전기오류수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사 경영진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임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동의하고 추가적인 감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사기준서 560⁵⁾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하고 감사보고서를 수정발행하거나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전임감사인이 검토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전기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감사인과 전임감사인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전임감사인이 여전히 감사보고서 재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회사는 당기감사인에게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기감사인이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기감사인은 전기오류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이미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수정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기감사인은 오류수정의 범위, 오류발생원인 및 전임감사인의 협조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재감사를 수행하거나 또는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행하고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수정이 적절하다는 점에 대해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었다면, 감사기준서 710 문단 A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감사기준서 560은 후속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우리는 20×2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 회사가 20×1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위해 적용한 주식 X에서 기술되어 있는 조정사항들에 대하여도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동 조정사항들은 적절하며 바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의 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1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나 검토, 기타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년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감사의견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이 때, 전임감사인도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여 오류수정 전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오류수정사항에 대해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전임감사인이 재발행할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

우리는 주식 X에서 기술되어 있는 오류수정을 위한 조정사항의 영향이 반영되기 전 ABC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 X에 기술되어 있는 오류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ABC 주식회사의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된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 X에 기술되어 있는 오류수정을 위한 조정사항에 대해 감사나 검토, 기타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조정사항이 적절하고 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의견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은 [당기감사인]에 의해 감사되었습니다.

한편, 당기감사인이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재작성된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8조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외감법 제3조제1항 각목에 열거된 회계법인 등이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의미한다. 즉, 외감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된 법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외감법 제3조 제1항 각목에 열거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면 해당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당기감사인이 새로 발행한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감법 상으로는 외감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된 감사인만이 법정감사인이 되므로 당기감사인은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전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재감사를 꺼려할 수 있으므로 당기감사인도 이에 대한 재감사를 할 수 있도록 외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상장회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인이 직접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현

행 외감법에는 전임감사인인 전기채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기감사인인 전기채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당기감사인도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전기채무제표 전체에 대한 재감사를 수행 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외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전기오류수정사항 감사 관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전기오류가 발견된 경우 회사의 경영진은 1차적으로 전임감사인과 오류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며, 전임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할 경우 그에 대한 감사를 전임감사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전임감사인이 재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한데,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만 독립성 준수를 요구하도록 윤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오류발생연도부터 재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 기간 동안 독립성이 유지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전임감사인의 재감사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전임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당기감사인에게 이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당기감사인은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당기감사인 또한 독립성 유지가 필요한데, 전임감사인과 마찬가지로 당기감사인에 대해서도 재감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만 독립성 준수를 요구하도록 윤리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당기뿐만 아니라 재감사 대상이 되는 기간 즉, 전기오류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도 독립성이 유지될 것을 요구하면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당기감사인의 감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제3의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너무 번거롭고 비용 또한 많이 발생되며, 재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다.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회사 또는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를 사업연도 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말감사 과정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전임감사인에게 전기오류 발생 사실을 통보해도 전임감사인은 다른 기말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당기감사인이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류의 영향이 커서 전기채무제표 전체를 재감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재감사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등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제2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8조 제6항).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회 이상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및 제48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제38조).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기오류를 기말감사 과정에서 발견할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10-K나 10-Q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12b-25 규정에 따라 10-Q의 경우에는 5일, 10-K의 경우에는 15일까지 보고서 제출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17년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정보이용자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회사가 전기오류를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정보이용자들은 당연히 수정 후 재무제표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고 전임감사인 역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였다면 정보이용자들이 수정 후 재무제표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제Ⅲ장 사례에서 살펴본듯이 감사보고서 재발행 없이 사업보고서만 재발행되거나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수치와 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일부 정보이용자들은 감사의견이 없는 수정 재무제표 대신에 감사의견이 존재하는 수정 전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한 신용평가회사의 DB담당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수정 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인이 다른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재무제표에 대해 둘 이상의 감사인이 존재하고 감사의견 역시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단일 의견 없이 부분 의견만 존재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이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⁶⁾. 또한, 당기감사인이 “우리는 20×1년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감사의견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감사보고서에 기술한 경우, 시장은 이를 비적정의견이 표명된 것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수정 후 재무제표에 대해 두 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을 합치면 결국 전기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미이지만,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가 수정되거나 사업보고서가 재발행되었더라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단일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없으면 수정 재무제표를 이용하지 않고 수정 전 재무제표(단일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존재하는 전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방법은 결국 오류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6) NICE신용평가의 재무제표 DB 관리담당자와 면담결과,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는 모형의 경우 감사인과 감사의견 정보도 같이 이용되는데, 이처럼 하나의 재무제표에 대해 둘 이상의 감사인과 둘 이상의 감사의견이 존재할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 한다.

이용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수정전 전기재무제표에 대해 전 임감사인인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당기감사인인 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전체 전기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이 표명된 것으로 보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V. 전기오류수정의 공시

1. 현행 규정

회사는 전기오류를 발견하였을 때 K-IFRS 제1008호의 소급 재작성 규정에 따라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 때 공시와 관련하여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은 이미 공시한 과거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자본시장법 제164조 제2항). 그러나 회사가 자발적으로 전기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이미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정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재무제표의 재작성 등으로 인해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4조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정신고 시에는 정정대상 공시서류,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정정사항 등을 아래의 양식에 따라 기재하며, 부가적인 설명이나 그 밖의 정보는 별도로 기술한다(『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6조). 한편,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5절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한다(『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5-1조).

정 정 신 고 (보 고)

××××년 ××월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대표이사 등의 확인】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정정 사례 : (주)본느>

정 정 신 고 (보 고)

2017년 3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5월 20일

3. 정정사항

당사는 2016년 재고자산 중 재공품 자산을 인식함에 따라 이에 비교표시되는 2015년 재무제표의 재공품 및 누락 된 제품 자산을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도 당기순이익이 변동하였으며 또한 2015년 미인식 된 자회사 터치인 술의 투자차액 상각 및 법인세효과를 추가함에 따라 지분법손실을 반영하여 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5년 사업보고서를 기재정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상기의 재무제표의 변동효과를 반영한 15년 현금흐름표 수정 및 기재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정정 전 사업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시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킴

“본 문서는 최종문서가 아니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당기의 사업보고서상에서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거나 과거의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 공시에 따른 책임문제가 대두된다. 비록 회사가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의 재작성 또는 사업보고서의 재발행 등을 통해 정정공시를 했지만 과거 사업보고서가 허위로 공시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동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경영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감리가 진행되는 경우 심사감리 착수 전에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였다면 기본조치를 감경받을 수 있다.

재무제표 재작성 또는 사업보고서의 재발행과 관련하여 또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불성실공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현행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은 불성실공시의 유형을 공시불이행, 공시변복, 공시변경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 상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 또는 사업보고서 재작성은 위의 세 유형 중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성실공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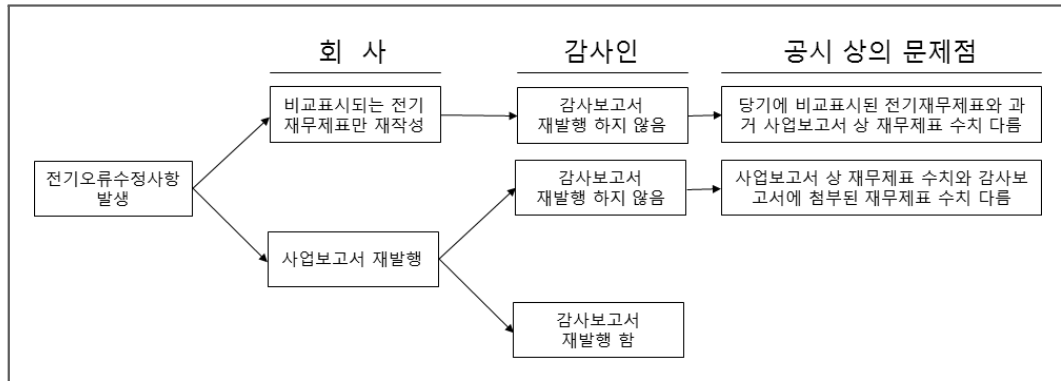
현행 자본시장법 상 사업보고서등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재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또한, 오류수정 등으로 인해 전기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기 사업보고서 상에서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수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과거 사업보고서도 재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정사항 관련 Q&A(2013.3.)’에서 감경⁷⁾을 받기 위한 자진 수정·공시방법으로 당기 사업보고서상 비교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거나 과거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답변하여 두 방법 모두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해 전기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정정신고서에 정정사항만 간략히 기술할 뿐 그러한 오류가 왜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오류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정보이용자들이 오류의 성격과 재발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오류발생 여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오류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대한 내부통제의 결함으로부터 발생된 것으로 재발가능성이 높은 오류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기오류가 Big R에 해당되어 10-K를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8-K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에게 더 이상 과거 재무제표를 이용하지 말도록 공지하고 그 이후에 10-K/A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업보고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도 정정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재작성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림 2>는 현재 전기오류수정사항 공시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제Ⅲ장의 사례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기오류 발견 시 오류수정을 반영하여 과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면 시장에 주는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보고서 재발행 없이 당기 사업보고서 상에서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재작성하거나 사업보고서는 재발행하였으나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간 재무제표 수치가 불일치하여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7)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경우 기본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감리착수 전에 수정·공시하게 되면 2단계 감경을, 감리착수 후 최초로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공시하게 되면 1단계 감경을 해주고 있다.

〈그림 2〉 전기오류수정사항 공시 관련 문제점



- (1) 당기 사업보고서 상에서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 오류가 포함된 과거의 사업보고서가 시장에 계속적으로 유통되는 위험 발생됨
 - 당기 사업보고서 상의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의 수치와 과거 사업보고서 상의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져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함
 - 전기에 이미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전기감사보고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시절차가 없어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감사인도 감사위험에 노출됨
 - 신용평가회사 등은 수정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이 있는 수정전 전기재무제표를 이용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에 왜곡이 초래될 수 있음
- (2) 전기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였으나 전기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은 경우
 - 재발행한 전기사업보고서 상 전기재무제표(수정후) 수치와 전기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전기재무제표(수정전) 수치가 달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함
 - 재발행된 전기사업보고서 상의 전기재무제표(수정후) 수치는 감사를 받지 않은 수치이므로 신뢰성이 약함
 - 신용평가회사 등은 수정후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이 있는 수정전 전기재무제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에 왜곡이 초래될 수 있음

8) NICE신용평가의 재무제표 DB 관리담당자와 면담결과, 재무제표가 수정되었더라도 수정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없으면 감사의견이 있는 수정전 전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신용평점 등을 산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3. 개선방안

가. 자발적 정정공시 규정의 신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의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정정하여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회사가 자발적으로 오류수정을 반영하여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물론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정사항 관련 Q&A(2013.3.)’ 등을 고려하면 현재에도 자발적인 사업보고서 정정공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의 작성과 공시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사업보고서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사업보고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나. 전기오류의 수정 및 공시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K-IFRS 제1008호는 전기오류가 발견된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기 사업보고서 상에서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당연히 오류수정이 반영된 재무제표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보고서 재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전기오류를 Big R과 Little r로 구분하여 Big R의 경우에는 10-K를 재발행하고 Little r의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재작성하도록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오류의 유형을 Big R과 Little r로 구분하고 Big R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도록 요구하고 Little r의 경우에는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재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Big R의 경우 사업보고서 재발행과 더불어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공시하여 투자자들이 오류의 유형 및 수정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오류발생 원인
- ② 오류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 ③ 오류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 ④ 오류의 재발가능성은 없는지
- ⑤ 회사의 내부통제환경에 주는 시사점

만약, 단기적으로 Big R의 경우에도 과거 사업보고서 재발행 없이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재작성하는 방안을 허용한다면 적어도 과거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 수치가 수정되었으므로 수정된 최근 수치를 이용하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만 정보이용자들의 혼

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할 경우 과거 사업보고서 이용금지 통보

박종성과 조은주(2018)에 의하면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른 사업보고서 정정공시 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보고서 정정공시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정공시 결정 후 실제로 사업보고서를 정정하여 공시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작성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들이 오류가 포함된 정보를 사용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업보고서를 재작성하기로 결정하면 그 즉시 수시공시 등을 통해 과거 사업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자발적 정정공시에 대한 책임 경감 규정 신설

현행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르면 회사가 심사감리 착수 전에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경우 기본조치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감사인과 공인회계사 또한 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도록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 조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조치를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감리가 진행되었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감리진행과 무관하게 자발적 정정공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일정부분 경감해주는 규정이 존재할 때 자발적 정정공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I.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들어 지정감사인인 당기감사인은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을 요구하는 반면, 전임감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감사인과 전임감사인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당기감사인이 제시한 수정사항이 명백한 오류라기보다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경우 두 감사인 간 갈등은 더 심화된다. 이러한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진이 전기오류수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만, 당기감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공시한다. 그런데 문제는 재작성된 전기재무제표가 아무런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임감사인은 전기오류수정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수정사항 또는 수정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으며, 당기감사인 또한 법정감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를 기피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회사는 우선적으로 전임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재발행을 의뢰한다. 이때, 전임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재발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당기감사인에게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기감사인은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당기감사인은 전기오류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이미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수정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기감사인은 오류수정의 범위, 오류발생원인 및 전임감사인의 협조 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것인지 또는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당기감사인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만 독립성 준수를 요구하도록 윤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전기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은 당기 사업보고서 상에서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재작성하는 방법과 과거 사업보고서 자체를 정정공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재작성하는 경우 또는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하였으나 감사보고서가 재발행되지 않은 경우 각각의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어떤 수치를 이용해야 하는지가 혼란스럽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전기오류수정 관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의 작성과 공시의 주체는 회사이므로 사업보고서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등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사업보고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오류의 유형을 Big R과 Little r로 구분하고 Big R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도록 요구하고 Little r의 경우에는 당기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재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또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Big R의 경우에도 과거 사업보고서 재발행 없이 당기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만 재작성하는 방안을 허용한다면 적어도 과거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 수치가 수정되었으므로 수정된 최근 수치를 이용하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셋째, 오류의 유형이 Big R에 해당되어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기로 결정하면 그 즉시 수시공시 등을 통해 과거 사업보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린다.

넷째, 현행 「감리결과조치양정기준」에 따른 감경 규정은 감리가 진행되었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 바, 감리진행과 무관하게 자발적 정정공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상의 책임을 일부 경감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 말에 6년 자유수임 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전임감사인과 당기감사인 간의 의견불일치 현상은 이처럼 감사인지정제가 확대될 경우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전기오류수정사항과 관련된 현행 감사 및 공시규정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무정보의 신뢰성 유지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종성 · 조은주. 2018. “재무제표 재작성에 따른 사업보고서 정정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미발표논문.
- 박경진 · 김기영 · 송문섭. 2014. “K-IFRS하에서 오류수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의 문제점”. 회계저널 제23권 제2호 : 345-369.
- 한국회계학회. 2018. 「전기오류수정 관련 공시제도 개선방안」.
- PCAOB. 2006. Adjustments to prior-period financial statements audited by a predecessor auditor.
- The Wall Street Journal, 2017.6.7.
- <http://www.auditanalytics.com/blog/amended-filings-whats-missing-in-10-ks/>
- <https://www.sec.gov/fast-answers/answers-form10khtml.html/non-timely-filings-an-overview/>
- Ernst & Young. 2017. 「Financial reporting developments : Accounting changes and error corrections」
- Audit Analytics. 2015. 「2014 Financial restatements : A fourteen year comparison」

The Improvement of Auditing and Disclosing for Correction of Prior Period Errors in Financial Statements

Jong Sung Park* · Moon Ki Chung**

— <Abstract> —

Conflicts are increasing in recent times between the incumbent auditor and the former auditor because while the incumbent auditor, who is a designated auditor, has requested the restatement of the prior period financial statements, the former auditor does not agree with it. In particular, if the adjustment requested by incumbent auditor may be a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s, rather than an obvious error,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auditors become more severe. The management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preparation and disclosure of the financial statements should review and make a final judgment on the necessity of adjustment. However, most managements restate financial statements because they can get qualified opinion if they do not accept the request of the incumbent auditor. Restated financial statements may be provided to information users without any verification process. In addition, the financial statement in the annual report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attached to the audit report would be different if the company reissued the past annual report to reflect the error correction, but the former auditor did not agree with it.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improvement of audit and disclosure for correction of prior period accounting errors, so as to contribute reliable information to the investors and minimize the confusion of the capital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the improvement of auditing and reporting system related to the correction of errors.

<Key words> correction of prior period errors in financial statements, financial restatement, annual report, external audit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jongsung@sookmyung.ac.kr,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mkchung@skku.edu, Corresponding Author